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6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 : 김태년 · 김성환 · 이학영

박지원・허 영・황명선

채현일 · 신영대 · 박균택

염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.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 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.

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회 폐쇄,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, 그 밖에 의장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3조의3 신설 등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의장은 국회 폐쇄,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,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
-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.
- ③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5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
- ⑤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73조의2(원격영상회의) ① 의장	<u><</u> 삭	제>			
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					
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					
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					
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					
<u>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</u>					
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					
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					
의를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					
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					
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					
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					
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					
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					
<u>다.</u>					
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					
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					
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					
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					
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.					
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					
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					
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					

표결할 수 있다.

-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있다.
-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의장 은 국회 폐쇄, 국회의원의 본회 의장 출입 제한, 그 밖에 의장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 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 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

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수 있다.

-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 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 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.
- ③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5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 있다.
- ⑤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.

 ⑥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

 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

 으로 정한다.